**서식 제7호** (제24조 관련) (개정 2017. 4.17)

| 자본재공제조합 작성란 | | |
|---|---|---|
| 인감대조 | 담당 | 팀장 |
| | | |
| 약정일자 : 년 월 일 | | |

# 양 도 담 보 계 약 서

| |
|---|
| 담보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|

**자본재공제조합 귀하**

담보제공자
주 소
상 호
성 명 (인)

담보제공자는 (이하 "채무자"라 한다)와 자본재공제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 기 체결한 한도거래 보증채무약정서(중고기계 대출보증·하자보증용) 및 다음의 담보하고자 하는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, 다음 내용에 따라 조합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제공자 소유인 별첨 양도물건(이하 "양도물건"이라 한다)의 소유권을 조합에 양도한다.

**제1조(담보하는 채무의 범위)** ①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에서 약정인이 선택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다.

| 구 분 | 채무의 범위 | 선택란 (인감날인) |
|---|---|---|
| 포괄근담보 | 보증채무약정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 | |
| 한정근담보 | 년 월 일자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 | |
| 특정채무담보 | 년 월 일자 ( )보증채무약정서(개별거래용)에 의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 | |

②이 담보는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한 제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효력을 가지며, 만일 이 양도담보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업무거래정지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
**제2조(양도물건의 점유, 관리 등)** ①양도물건(제4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담보제공자가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점유, 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.

②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점유,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, 설치장소, 보관설비, 기타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모두 조합의 지시에 따르고 조합의 사전승낙 없이 변경하지 아니한다.

③담보제공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조합에 통보한 바 있는 채권관리 전담자를 통하여 양도물건을 회수하고, 회수된 양도물건에 대하여 A/S를 수행한다.

**제3조(양도물건의 보존 등)** ①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멸실, 훼손,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통지하고 조합의 청구에 따라 멸실, 훼손 등 담보가치 하락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수표를 지체 없이 보충하여 조합에 지급하기로 한다.

②양도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타 다툼이 생길 때에는 담보제공자가 법적 다툼을 해소해야 한다.

③담보제공자는 제2항의 의무를 미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법적책임을 진다.

**제4조(양도물건의 변경)** ①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조합이 제1항에 의거 양도물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서의 별첨 양도물건 목록 또는 명세표를 교체함으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조합에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.

**제5조(양도물건의 처분)**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사전의 통지 없이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, 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,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로 한다.

**제6조(양도물건의 인도, 대리처분)** ①담보제공자는 입고확인서에 기재된 장소에 보관중인 양도담보 공정증서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인도청구를 받을 경우,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조합 또는 조합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.

②담보제공자는 보증사고 등 사유가 발생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양도사실 확인 및 임의반출 동의서에 기재된 양도물건을 반출하여 처분하고, 그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계약 기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하며 매각처분의 대금을 지체 없이 조합에 인도한다.

**제7조(물상대위)** 양도물건에 관하여 멸실, 훼손, 공용징수,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, 배상금, 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조합이 이를 수령하여 그 수령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.

**제8조(양도물건의 조사, 협조)** ①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이 변경된 경우 제4조에 따라 조합이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양도물건 목록 또는 명세표를 변경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, 조합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당시의 양도물건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다.

②조합이 필요에 따라 양도물건의 조사에 임할 경우 담보제공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.

**제9조(비용부담)** 이 계약에 의한 조합의 권리보전이나 행사에 관한 기타 비용은 담보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조합이 대신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갚기로 한다.

**제10조(합의관할)** 이 약정서에 의한 소송은 조합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 다만, 약정인 또는 조합이 관할 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다.

| | |
|---|---|
| 본인은 채무자가 조합과 기 체결한 한도거래 보증채무약정서(중고기계 대출・하자보증용) 및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함. | (인) |

별 첨 : 양도물건 목록

(별 첨)

# 양 도 물 건 목 록

| | | |
|---|---|---|
| 소 재 지 | | |
|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| | |
| 물건 | 품 명 | |
| | 수 량 | |
| | 단 가 | |
| | 금 액 | |
| 특 기 사 항 | | |

주 : 양도물건이 다수일 경우는 별도의 형태로 작성하여 내역을 첨부합니다.

상기물건이 양도담보 계약서 [약정일자 : 년 월 일]의 전문 및 제4조에서 정한 양도물건임을 확인합니다.

| 담 보 제 공 자 |
|---|
| 주 소 :<br><br>상 호 :<br>성 명 : ㊞ |